

4. 잔여자산 회수 내역

가. 해산개시일(해산등기일) :

청산종료일 :

나. 청산등기일 현재의 자산·부채(요약) 현황

(단위 : 천미불)

자 산	금 액	부채 및 자본	금 액
유 동 자 산 투 자 및 기 타 자 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		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본 잉 여 금	
계		계	

다. 청산손익(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):

라. 회수되어야 할 재산[("가"의 순재산액±"나")×남측 투자비율] :

마. 회수재산 내역

(단위 : 천미불)

회수일자	구 분	회수재산의 종류	금 액	비 고
	계			

바.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:

5. 첨부서류

가. 청산인 경우

-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
- 잔여재산(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)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(송금처 명기),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

나. 대부채권 회수인 경우

-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(송금처 명기)
- ※ 1)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을 것(대부채권 회수인 경우 제외)
- 2) 본 보고서는 남측으로 회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. 다만, 해외(북한 포함)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에 보고 할 것

